

제목: 공정으로서의 정의 §50. 기본제도로서의 가족 (The Family as a Basic Institution)  
번역자: 이한

50.1 가족에 대한 다음 언급들은 겸손한 것이다. 그것들은 왜 정의의 원칙이 가족에 적용되는 것만을 이야기할 뿐, 그 원칙이 요구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이것을 하기 전에 나는 가족이 기본구조의 일부라고 논평하겠다. 그 이유는 기본구조의 본질적 역할 중 하나가, 사회의 정연한(orderly) 생산과 재산을 구축하고 그 문화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 사회는 항상 무한한 시간 동안의 협동 제도로 간주된다는 점을 상기하라. 그 질서가 끝나게 될 것이고 사회는 해체될 미래 시간이라는 발상은 우리의 평등관에 낯설다. (the idea of a future time when its affairs are to be wounded up and society disbanded is foreign to our conception of equality) 재생산 노동은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노동이다. 이 점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도덕적 발달과 더 넓은 문화로의 교육을 보장하면서 아이를 기르고 보살피는 합당하고 효과적인 방식의 질서에 가족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시민들은 정의로운 정치와 사회 제도를 지지하는 정의감과 미덕을 가져야만 한다. 더군다나 지속되는(enduring) 사회를 유지하도록 적절한 수준의 가족이 이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런데, 가족의 특정한 형태(일부일처제, 이성애 등등)는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아직 요구되지 않았다. 그 가족이 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다른 정치적 가치에 위배되지(run afoul) 않는 한 말이다.

2 이 필요성들은 기회의 공정한 평등을 성취하려는 노력을 포함하여 기본구조의 모든 질서에 한계를 지운다. 가족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에 제약을 가하며, 두 원칙은 그러한 제약들을 고려하도록 진술되었다. 여기서의 차등의 원칙이 유관한데, 왜냐하면 차등의 원칙이 충족되었을 때 더 적은 기회를 가진 이들은, 가족과 다른 사회적 조건들이 부과하는 제약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복잡한 문제를 여기서 더 설명할 수는 없으나, 어린이로서 우리는 어른들이 일정한 도덕적 사회적 권위를 가지는 소규모의 친밀한 집단에서 성장한다고 가정하자.

3 50.2. 정의의 원칙이 가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은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평등한 정의를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오해(misconception)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정의의 기본주제는, 사회질서의 주요 제도를 시간에 걸친 사회적 협동의 통일된 체계로 이해된 사회의 기본구조다. 정치적 정의 원칙들은 이 구조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나 그 원칙들은 가족을 포함하여 그 사회 내의 많은 결사들의 내부적 삶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만일 그 원칙들이 가족의 내부적 삶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면, 아내들과 그들의 남편 사이에 평등한 정의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을 던질 수 있다.

4 우리는 이 질문을 앞에서 언급하였으나(§4.2) 추가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거의 같은 질문이, 그것이 교회건, 대학이건, 전문 과학적 결사건, 깡버이건, 노동조합이건 모든 결사에 관하여 제기될 수 있음을 주목하라. 가족은 이 측면에서 특이한 것이 아니다.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정의의 두 원칙이 (다른 자유주의적 원칙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거버넌스가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주교와 추기경(Bishops and cardinal)은 선출될 필요가 없다. 교회의 위계적 공직에 결부된 이득이 차등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정치적 정의의 원칙들이 교회의 내부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렇게 적용된다면 양심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와 일관되지도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5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정의의 원칙들은 정말로, 교회의 거버넌스에 관련 있는 일정한 본질적 제약을 부과한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4.2) 교회는 효과적인 불관용을 실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의의 원칙이 그렇게 요구하듯이, 공공 법률은 이단(heresy)과 배교(背教; apostasy)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으며 그 구성원들은 항상 그들의 신앙을 자유롭게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정의의 원칙이 교회의 내부 삶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모든 교회와 결사가 받아들여야 하는 제약에 의하여 그 구성원들의 권리와 자유는 보호하는 것이다.

6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결사와 집단은 아닐지라도, 개인들 사이의 다양한 종류의 관계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결사와 집단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정의관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정의관은 정치적 정의관이 아니다. 각각의 경우에 적절한 관념은 별도의 추가적인 문제로서 특정한 개별 경우에, 당면한 그 결사 집단의 관계의 본질과 역할에 비추어 새로(anew) 고려되어야 한다.

7 50.3 이제 다시 가족을 살펴보자, 여기서도 공식은 동일하다. 정치적 원칙은 가족의 내부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제도로서의 가족에 필수적인 제약을 부과하며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권리와 자유 그리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내가 말했듯, 이것은 가족의 구성원인 평등한 시민들의 기본적 요구를 구체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기본구조의 일부로서 이러한 자유들을 침해할 수 없다. 아내들은 남편들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시민들이므로, 그들은 그들의 남편과 동일한 기본적 권리와 자유 그리고 공정한 기회를 모두 가진다. 그리고, 이것은 정의의 다른 원칙들의 올바른 적용과 함께, 그들의 평등과 독립을 보장하기에 충분함이 틀림 없다.

8 그 논지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시민으로서의 사람들의 관점과, 가족 및 다른 결사체들의 구성원으로서 사람들의 관점을 구별한다. (주석 46 - 나는 이 사고를 Joshua Cohen에게서 빌렸다. 그녀의 논평 “Okin on Justice Gender and Family” in the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22 [June 1992] : 263-286 을 보라. 주석 46 끝) 시민으로서 우리는, 정치적 정의의 원칙에 의해 구체화된 제약을 결사들에 부과할 이유가 있다. 반면에 결사의 구성원들로서 우리는 그 제약들을 제한하여, 해당 결사에 적합한 자유롭고 변형하는 내부 삶을 위한 여지를 마련할 이유가 있다. 여기서 다시금 우리는, 상이한 종류의 원칙들 사이의 노동분업의 필요성을 본다. 우리는 정치적 정의관이 가족의 내부 삶에 직접 적용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부모로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치적 원칙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는 것은 분별 있는(sensible) 것이라고 거의 보기 힘들다. 여기서 그 원칙들은 적용되기에 부적절한 것이다. (out of place) 확실히 부모들은 어떤 정의관(또는 공정관)을 따

르고, 그들의 자녀들에 관하여 일정한 한계 내에서 적절한 존중을 하였지만 이것은 정치적 원칙들이 지시하는 바는 아니다. 물론 아이들에 대한 학대와 방치의 금지는 제약으로서 가족법의 필수적인(vital) 부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지점에서 사회는 부모의 자연적 애정과 선의를 신뢰해야만 한다. (주석 48- 마이클 샌델은 그의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 p.33 에서 조화로운 가족이 불화와 싸워야 하는 상황을 다룬다. 이전에 겪은 시간의 애정과 개방성은 공정과 권리의 요구에 무너진다(give way) 그는 과거의 좋은 감정들이 예외없는 통합성과 사려깊음(judiciousness)에 의해 대체되어 어떠한 부정의도 만연하지 않는 상태를 상상한다. 여기서 잘못 중 하나는, 그는 두 원칙이 기본구조에만 적용되는 것인데도 모든 결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다른 잘못은 그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완전한 정의의 구축이 가정의 도덕적 성격을 회복하리라고 말한다고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정의로서의 정의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다. 일부 정의관은 정말로 다른 결사나 국지적 정의의 경우처럼 가족에 적합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관념-통상 결사마다 상이한 종류의 관념은-필요하긴 하지만, 가정의 도덕적 성격을 회복하기에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기본적 정의의 근본적인 역할은 그 이상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 주석 48 끝)

9 여성의 평등에 정초된 고려사항들을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 정의의 원칙은, 미래의 시민이자 그런 존재로서의 요구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대변하여(on behalf of) 가족에 제약을 부과한다. 내가 주목했듯이 그들이 아이의 양육과 보살핌이라는 과업의 불비례적인 몫을 계속 져(borne)왔다는 것이다. 이혼법에 의하여 추가적인 불리함이 존재할 때 이 부담은 여성들을 매우 취약하게 만든다. 이 부정의는 여성들에게만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부정의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체제의 미래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정치적 덕을 획득하는 어린이들의 능력을 훼손한다. 밀은 그의 시대에 가족이 남성 전체주의의 학교라고 주장하였다. 가정은, 민주주의와는 양립불가능한 사고와 감정 및 행위 양식의 습관을 반복함으로써 머리 속에 심어주었다(inculcated) 만일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명하는(enjoining) 정의의 원칙이 가정을 개혁하기 위하여 호소될 수 있을 것이다.

10 50.4. 그리하여 정치적 자유주의가 기본 구조에 적용되는 정치적 정의와, 그 구조 내의 다양한 결사에 적용되는 다른 정의관을 서로 구별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영역과 비정치적 영역을 이룰때면, 그 각각의 고유한 원칙에 의하여 통치되는 두 개의 분리되고 단절된 영역을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 기본구조만이 정의의 기본주제라 할지라도 정의의 원칙은 가족과 다른 결사에 필수적인(essential) 제한을 부과한다. 가족의 성인 성원과 다른 결사의 성원들은 우선 평등한 시민이다. 그것은 그들의 기본적 위치다. 그들이 몸 담고 있는 어떠한 제도와 결사도 시민으로서의 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11 소위 삶의 영역(spheres of life)는 그렇다면 정의의 원칙과는 별도로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영역은 일종의 공간이나 장소가 아니라, 단순히 정치적 정의의 원칙이 기본구조에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 내의 결사에는 간접적으로 적용된 결과(upshot)일 뿐이다.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시민들의 공정한 기회를 규정하는 원칙들은, 모든 영역에 언제나 적용된다. 여성의 평등한 권리와 미래 시민으로서 그 자녀들의 요구는, 양도불가능하며 어디서건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러한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성 구별은 배제

된다. (§18.4-6) 따라서 정치적이고 공적인 영역과, 비공적이고 사적인 영역은 정의관과 그 원칙이 내용과 적용으로부터 그 형태를 취하게 된다. 만일 사적 영역이 정의로부터 면제되었다고 이야기되는 공간이라면 그러한 사적 영역 따위는 없다.

12 50.5. 더 일반적으로,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여성의 완전한 평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질서를 포함해야한다. 만일 여성의 불평등의 주된 원인은 아닐지라도 기본적 원인이 자녀 출산, 양육, 보살핌에 대해 전통적인 가정 내 노동분업에서 더 많은 몫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몫을 평등화하거나 그것을 보상하는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 특정한 역사적 조건 하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최선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는 정치철학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제 흔한 제안은 표준이자 가이드라인으로서, 법은 자녀를 기르는 아내의 일을 (지금 흔한 것과 같은 정다로 부담하고 있다면) 그들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번 소득에서의 평등한 몫을 가질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한다. 이혼하는 경우, 그녀는, 그 시기 동안 그 가족의 자산의 증가된 가치 중 평등한 몫을 가지고 떠나야만 하는 것이다. (주석 52)

13 이 표준(norm)으로부터의 어떠한 이탈도 특별하고 분명한 정당화를 요구한다. 남성이 그의 소등능력을 갖고서 가정을 떠나면서 그의 아내와 자녀를 이전보다 훨씬 더 불리한 상태로 내버려두는 것은 관용될 수 없는 일로 보인다. 그들 자신을 부양하게끔 강제되어, 그들의 경제적 위치는 자주 위태하다. 이러한 사태를 허용하는 사회를 여성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며, 여성의 평등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 쓰지 않는 것이며,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그것이 정치 사회라고 애초에 이야기될 수조차 있을까? (주석 53)

14 50.6. 오킨은 그녀의 비판적이긴 하나 동정적인 <정의론>에 대한 논의에서, 정의론에는 기준과 젠더-구조화된 사회제도에 대한 잠재적 비판이 내포(implicit)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바 있다. 이 비판은 그녀가 생각하기에 다음과 같은 점으로부터 발전될 수 있다. 첫째,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그들이 대표하는 성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둘째, 가족과 젠더 체계가 기본 구조의 일부로서 그 원칙의 엄밀한 심사(scrutiny)를 받아야 한다는 것.

15 나는 Okin이 옳다고 생각하고 싶다. (should like to think) 결정인 질문은 이것이다. 젠더-구조화된 제도라는 말로 포괄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 만일 우리가 젠더 체계가 미래 시민으로서 아이들의 것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회 질서를 포함한다고 이야기한다면 확실히 그 체계는 정의의 원칙에 의한 비판을 거쳐야만 한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 원칙들의 달성이 체계의 흠을 치유하기에 충분한지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사회이론과 인간 심리학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에 달려 있다. 그 질문은 정의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며 그래서 나는 여기서 그 문제에 대하여 더 성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16 나는 내가 정치적 정의관에 의하여 커버되는 공적 이성의 오직 몇몇 가치들에만 호소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가치들 중에서는 여성의 평등, 미래 시민으로서 아이들의 평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의 정연한 생산과 재생산 및 그 문화의 다음 세

대로의 전승을 확보함에 있어 가족이 갖는 가치가 있다. 그리고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그러한 제도들을 지지하는 태도를 계발하고 고양함에 있어 가족이 갖는 가치도 있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정치적 가치가 호소될 수 있을 것이다. <끝>